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“2020년”을 “2022년”으로 한다.

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부칙 제2조 중 “2020년”을 “202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	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의 시행 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정원 1 명(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또 는 시설서기보 1명)은 <u>2020년</u> 6 월 6일까지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2년</u> -- -----.